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37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박상혁 · 이해식 · 한민수
김영환 · 백혜련 · 한준호
김우영 · 한창민 · 강득구
서미화 · 김한규 · 김용만
정준호 · 박수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43조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u>20억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 ----- ----- ----- ----- ----- ----- ----- ----. ----- ----- ----- ----- ----- ----- <u>50억원</u> ----- -----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제43조(과징금) ----- ----- ----- ----- ----- ----- -----.

없는 경우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100억 원-----

-----.

제50조(과징금) ① -----

20억 원

②

원

100억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 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
제53조(과징금) ① -----

-----20억원-----
-----.

② -----

-----100억원-----

-----.

③ -----

-----50억원-----

부과할 수 있다.

-----.